

의안번호	2208324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5.4.14.
추계번호	25D1012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각각 37억원(연평균 7억 4,000만원), 81억 7,900만원(연평균 16억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평균
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 (안 제 10조제10항 신설)	시나리오1 (60% 구축)	711	725	740	754	770	3,700	740
	시나리오2 (80% 구축)	1,572	1,603	1,635	1,668	1,701	8,179	1,636

주: 1.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시·군·구의 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적용하고, 시스템 운영비용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(시나리오1) 전체 시·군·구 중 60%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
(시나리오2) 전체 시·군·구 중 80%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0항 신설(자동경고발 신시스템 구축· 운영)	시장등은 금지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 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10항 신설 (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시장등이 금지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(이하 “자동경고발신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·자치구(226곳)와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시(제주시, 서귀포시)를 지역단위로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추계함
-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29개 시·군·자치구 중 99개(43%)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제 운영할 시·군·자치구를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축비율을 60%와 80%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
 - 기 운영한 바 있으나 미미한 단속효과 등으로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되어 운영을 종료한 지자체가 있으며, 금지광고물 등의 건수가 단속이 필요할 정도로 유의미하지 않아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존재
- [참고자료]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시·군·구 현황
- 시스템 운영비용은 장비임대·위탁운영 등 운영 형태 및 전화발신횟수에 따른 전화요금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,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지자체 사례를 준용하여 월 150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
 - 장비임대료·번호사용료: 100만원, 발신료: 50만원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4월 기준, 단위: %)						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1.9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가적으로 구축·운영이 필요한 시·군·구 수와 운영비용을 곱하여 추계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29개 시·군·구 중 60%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시·군·구는 38곳이고, 80%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시·군·구는 84곳임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스템 운영 비용은 연간 1,800만원으로 가정(월 150만원×12개월)하고 2024년도 비용이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2] 시나리오별 추가 구축 필요 시·군·구 및 연간소요

(단위: 개, 백만원)

기 구축 (a)	시나리오1(60%)				시나리오2(80%)			
	대상(b)	추가구축 필요 (c=b-a)	1곳당 운영비용 (d)	연간소요 비용 (c×d)	대상 (e)	추가구축 필요 (f=e-a)	1곳당 운영비용 (g)	연간소요 비용 (f×g)
99	137	38	18	684	183	84	18	1,5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각각 37억원, 81억 7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나리오1 (60% 시·군·구 구축)	711	725	740	754	770	3,700
시나리오2 (80% 시·군·구 구축)	1,572	1,603	1,635	1,668	1,701	8,17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시·군·구의 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적용하고, 시스템 운영비용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현황

시도	시군구	
계	99	
서울	12	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
부산	16	전체
대구	6	중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, 달서구, 달성군
인천	8	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연수구, 부평구, 서구, 계양구
광주	5	전체
대전	5	전체
울산	5	전체
경기	11	고양특례시, 화성특례시, 성남시, 부천시, 남양주시, 안산시, 안양시, 파주시, 군포시, 안성시, 양주시
강원	6	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태백시, 속초시, 양양군
충북	3	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
충남	5	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서산시, 당진시
전북	2	전주시, 정읍시
전남	2	여수시, 순천시
경북	5	포항시, 경주시, 구미시, 경산시, 상주시
경남	6	창원특례시, 김해시, 거제시, 양산시, 함양군, 거창군
제주	2	제주시, 서귀포시
세종	0	

자료: 각 지자체